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8-0046 호

201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 내지 11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23조에 의거
"2018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 2.

필수 확인 사항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신청,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http://www.insports.or.kr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전문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54개 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택견, 댄스스포츠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일반과정	• '18.4.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250)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주1)]	○			○(250)	경과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주1)]	○			○(250)	경과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주1)]	○			○(250)	경과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 한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15.1.1 이후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18.4.7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주2)]	○			○(250)	경과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 한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15.1.1 이후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18.4.7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주2)]	○			○(250)	경과조치
특별과정	• '18.6.2 현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 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종목의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250)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5~3.13	3.5~3.20	4.7	4.27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5.11~5.18	6.2~11.24	8.1~11.24	12.7	국민체육진흥공단

주1) **적용시한:**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2) **적용시한:**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일반과정	• '18.5.12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	○	○(90)	
	• '18.5.12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주1)]	○	○	○	○(90)	
	• '18.5.12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	○(90)	
특별과정	• '18.6.14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18.6.1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18.6.14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40)	
추가취득	• '18.6.14 현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4.12~4.20	4.12~4.30	5.12	5.31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6.1~6.8	6.1~6.11	6.14~7.8[주2)]	7.12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3~7.19	7.23~9.16	7.23~10.21	11.9	국기원, 동아대, 조선대, 충남대, 한체대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19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최종 불합격(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일부 동계종목은 6.9~7.8 사이 시행 가능하며, 확정 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생활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54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일반과정	• '18.4.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120)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주1)]	○	○	○	○(120)	경과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주1)]	○	○	○	○(120)	경과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주1)]	○	○	○	○(120)	경과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주1)]	○	○	○	○(120)	경과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주1)]	○	○	○	○(120)	경과조치
	• 15.1.1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한다)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15.1.1 이후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18.4.7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주2)]	○	○	○	○(120)	경과조치
특별과정	• '18.7.28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 · 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40)	
	• '18.7.28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40)	
	• '18.6.14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40)	
	• '18.6.1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18.4.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추가취득	• '18.6.14 현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5～3.13	3.5～3.20	4.7	4.27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실기·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6.1～6.8	6.1～6.11	6.14～7.8[주3)]	7.12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3～7.20	7.28～10.7	7.28～10.28	11.9	국민체육진흥공단, 원광대

주1) **적용시한:**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2) **적용시한:** 2015년 1월 1일 이후 체육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3) 일부 동계종목은 6.9～7.8 사이 시행 가능하며, 확정 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일반과정	• '18.5.12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90)	
특별과정	• '18.6.1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40)	
추가취득	• '18.6.14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4.12～4.20		5.12	5.31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구술	접수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6.1～6.8	6.1～6.11	6.14～7.8[주1)]	7.12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3～7.19	7.23～9.16	7.23～10.21	11.9	강릉원주대 등 20개 기관

주1) 일부 동계종목은 6.9～7.8 사이 시행 가능하며, 확정 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57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일반과정	• '18.5.12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90)	
특별과정	• '18.6.14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40)	
	• '18.6.1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40)	
	• '18.6.1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40)	
추가취득	• '18.6.14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4.12~4.20	5.12	5.31	필수(1) : 유아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6.1~6.8	6.1~6.11	6.14~7.8 주1)	7.12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3~7.19	7.23~9.16	7.23~10.21	11.9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광주대, 중앙대, 호서대

주1) 일부 동계종목은 6.9~7.8 사이 시행 가능하며, 확정 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노인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55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일반과정	• '18.5.12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90)	
특별과정	• '18.6.1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40)	
	• '18.6.1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40)	
추가취득	• '18.6.14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4.12~4.20	5.12	5.31	필수(1) : 노인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구술	접수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6.1~6.8	6.1~6.11	6.14~7.8 주1)	7.12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3~7.19	7.23~9.16	7.23~10.21	11.9	가톨릭관동대, 대전대, 목포대, 신라대, 연세대, 이화여자대, 호남대

주1) 일부 동계종목은 6.9~7.8 사이 시행 가능하며, 확정 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건강운동관리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일반과정	• '18.6.23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주1)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	○	○ (200)	
	• '18.6.23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	○	○ (200)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주2)	○	○	○	○ (200)	경과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주2)	○	○	○	○ (200)	경과조치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8과목)
	5.17~5.25	5.17~6.4	6.23	7.9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실기·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검정내용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7.9~7.13	7.9~7.16	7.21~7.22주3)	7.26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국민체육진흥공단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27~8.2	8.4~11.4	8.4~11.25	12.7	계명대, 순천향대, 연세대, 조선대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19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최종 불합격(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적용시한:**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3) 응시인원에 따라 7.21~23일 시행 가능하며, 확정 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34개 종목)

※ '18년 실제 시행되는 자격종목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컬링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일반과정	• '18.5.12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과정	• '18.6.14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 '18.6.1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40)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18.6.14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종목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례
추가취득	• '18.6.14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4.12~4.20	5.12	5.31	필수(1) : 특수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6.1~6.8	6.1~6.11	6.14~7.8주1)	7.12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3~7.19	7.23~9.16	7.23~10.21	11.9	대구대, 백석대, 용인대, 원광대

주1) 일부 동계종목은 6.9~7.8 사이 시행 가능하며, 확정 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후 3년 경력요건에 따라 '19년부터 시행(응시자격 등 홈페이지 참고)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

(단위: 원)

자격구분		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연수	자격증 발급(재발급)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500,000	1,000
	특별과정	–	–	500,000	1,000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50,000	1,000
	특별과정	18,000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노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18,000	30,000	400,000	1,000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5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따른 택배비는 본인 부담

유 의 사 항

□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시험일 기준
  ※ 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 시험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 시험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 요건(만 18세)을 충족해야함

□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 취소**(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실기·구술기관 연락처

자격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02) 2144-8162	* 태권도 종목에 한해 국기원을 해당 자격 단일 자격검정 기관으로 지정
	국기원(태권도)	063) 320-0210~0212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031) 526-9445	
	국기원(태권도)	063) 320-0210~0212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02) 410-1177	

연수기관 연락처

자격구분	기관명 및 전화번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	국민체육진흥공단 02) 410-1177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5)	국기원 063) 320-0210~0212	동아대 051) 200-6351	조선대 062) 230-7404	충남대 042) 821-6441	한체대 02) 410-6662~4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	국민체육진흥공단 02) 410-1177	원광대 063) 850-638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0)	강릉원주대 033) 640-2647	건국대 043) 840-3900	경기대 031) 249-9082	경남대 055) 249-6380	경상대 055) 772-2290	경희대 02) 959-9047	계명대 053) 580-5513
	군산대 063) 469-4641	부경대 051) 629-5633	안동대 054) 820-7380	용인대 031) 8020-3166	인천대 032) 835-8570	전남대 062) 530-0550	전북대 063) 270-3590
	제주대 064) 754-8318	중앙대 02) 820-6478	충남대 042) 821-6403	충북대 043) 249-1805	한양대 031) 400-5727	호서대 041) 540-5860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	가톨릭관동대 033) 649-7778	경남대 055) 249-6380	광주대 062) 670-2209	중앙대 02) 820-6478	호서대 041) 540-5869		
노인스포츠지도사 (7)	가톨릭관동대 033) 649-7959	대전대 042) 280-2910/2924	목포대 061) 450-6095	신라대 051) 999-5574	연세대 02) 2123-6582	이화여자대 02) 3277-2556	호남대 062) 940-3706/3617
건강운동관리사 (4)	계명대 053) 580-5513	순천향대 041) 530-1544	연세대 02) 2123-8139	조선대 062) 230-7432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4)	대구대 053) 850-6080	백석대 041) 550-2989	용인대 031) 8020-3160	원광대 063) 850-6206			

□ 홈페이지 및 연락처 안내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ports.or.kr) : **원서접수, 연수등록, 결과발표** 등
- 대표 안내전화 : 국민체육진흥공단 02) 410-1177

본 시행 계획은 2018년도 연간 추진일정 안내를 위한 공고이며, 응시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험 1개월 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나의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스포츠복지지원에서 스포츠산업육성까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만듭니다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